2025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9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6억 7천7백만원 대비 1억7천만원(0.5%)이 증액된 348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34,847,475	34,677,475	170,000	0.5%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5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7천만원(0.5%)이 증액된 348억 4천7백만원임.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_	476,499	_	_
세출예산	34,847,475	34,677,475	170,000	0.5%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출예산안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6억 7천7백만원 대비 사업비 1억7천만원(0.5%)이 증액된 348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34,847	34,677	170	0.5
일반 회계	소 계	28,027	27,857	170	0.6
	행정운영경비	2,114	2,114	_	_
	사업비	25,913	25,743	170	신규
도시 개발	소 계	6,820	6,820	_	_
개발 특별 회계	사업비	6,820	6,820	_	_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은 서소문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하는 세출 편성임.

나. 세출 세부사업 검토

1)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1377쪽)

-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본관 증축(3,300㎡) 및 리모델링(11,324㎡)의 총 사업비가 792억원으로 산출¹⁾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37조의2²⁾에 의거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2002년 개관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시환경 유지기능 저하³⁾와 관람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서소문본관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 주요 사례 >



¹⁾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4. 6. 27. ~ 2025. 2. 23.)

²⁾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³⁾ 수동 공조시스템 내구연한(20년) 초과로 인한 2024년 누수 및 결로 21건 발생.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2020년에 전시동, 사무동, 인근 어린이 집과 연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본구상 및 중앙 투자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익창출 및 운영수지 개선 등의 문제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음.

이후 2022년 전시동 중심의 광장 공간 재배치 기본구상으로 서울시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매장유산 선조사 및 의회통합청사 조성과 관련된 협의 부재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바 있음.

현재는 앞선 과업 추진에서의 보완사항4)을 반영하여 전시동 증축 및 리모델링을 구상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으며,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산출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자 추경을 편성한 것임.

<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사업 변경 현황 >

구분	2020. 2.	2022. 8.	2024. 6.
사업비	84,870백만원	32,900백만원	79,183백만원
사업규모	연면적 22,547㎡ (지하 2층, 지상 6층)	리모델링 6,000㎡, 증축 3,000㎡	리모델링 11,324m², 증축 3,300m²
개관일	′25.3.	′26. 5.	′30. 9.
내용	전시동 리모델링, 사무동 재건축 (사무동 철거후 어린이집 연계 증축)	전시동 중심의 광장 공간 재배치, 설비시설 전면교체	전시동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구성
추진경과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기본구상 후 타당성조사 진행

⁴⁾ 명확한 사업범위 목표 설정, 효율정인 공간 기획 추진 등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2조5에 따라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서울시립미술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수수료의 확보는 절차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조사 관련 약정 수수료 구성(안) >

단 계	내 용	수수료 (만원)
기본수수료 (분성방법의 정형화 정도)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	7,000
부가수수료 (조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 총 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2,500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의 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의 수요 및 편익을 별도의 방법론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	2,500
	· 설문조사(이용의향 및 지불의사 금액 조사)	3,000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2,000
합계		17,000

⁵⁾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2조제2항6에서는 통상적인 타당성조사의 기간을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는 바, 동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립미술관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조속한 용역 착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타당성 조사 대상확인에 필요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뒤늦게 추진(2024. 6. 27.)하여 적절치 못한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 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 기간 >

-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10개월
-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증축,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8개월
- 서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9개월
- 안동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 9개월
-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재 서소문본관 리모델링을 계획을 세 차례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노력해야 할 것임.

⁶⁾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 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²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